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나268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나268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841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1. 12. 21.

판결 선고 2022. 1.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841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0. 체결한 협의분할계약을 11,415,53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15,5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3행의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② 망 G와 처인 I은 늦어도 1961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3남매를 두었고{C(N생), B(피고), J}, 그로부터 30년이 훨씬 지난 1995. 12. 13.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9. 4.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바(다만 I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다), 이 사건 주택은 망 G와 I이 평생을 함께 일구고 유지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I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자신의 고유한 권리뿐만 아니라 상속지분까지 장남인 피고에게 사실상 양도하고, C, J이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사실상 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I의 정서적인 권리를 보존하고, 장남인 피고가 I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부양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영훈

판사노태헌

판사김창현

별지